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드명	BNK K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정정서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정사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효력발생일	2024년 04월 26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아니하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<b>[요약정보]</b>			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.</u>	7.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아니며</u> 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<u>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</u>

[요약정보]

표지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생략)	BNK자산운용(주)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.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이며, (현행과 동일)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자 유의사항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- 집합투자증권은 「예금자보호법」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는</u>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4.04.26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/ <u>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/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오기 정정	가. 투자 대상 위의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 <u>회계기간</u> 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	가. 투자 대상 위의 ---(생략)--- 합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 <u>계약기간</u> 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

		(이하 생략)	(이하 현행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·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</u>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</u>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대부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21.5337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3.2.24</u>)</p>	<p>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아니하며</u>,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<u>보호되지 않습니다</u>.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,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대부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15.0270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4.2.24</u>)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~ (3) (생략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과세</p> <p>(1) ~ (3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</p>

		<p>입자</p> <p>- 분리과세한도: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 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p> <p>(5) (생략)</p>	<p>입자</p> <p>- 분리과세한도: 1,5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, 이연퇴직 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)</p> <p><u>연금소득이 1,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(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 부터 적용)</u></p> <p>(5) (현행과 동일)</p>
<b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가. 요약재무정보 주1) ~ 주4) (생략) 주5) <u>(주식 추가)</u>	가. 요약재무정보 주1) ~ 주4) (현행과 동일) 주5) <u>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(5기 0.92백만원 발생)</u>
-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<b>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4.04.10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채권평가회사 주소 변경	가. ~ 다. (생략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☎ 02-2251-1300 (이하 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채권평가회사 (1)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한국자산평가 -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☎ 02-2251-1300 (이하 현행과 동일)

<끝>.